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물가대책장관회의 : 2001. 1. 31.)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안 제10조)

2.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 제3호의 본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로 함.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최근들어 주택의 전·월세가 상승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98~2000년까지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이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이었으나, 2000년말 “전용면적 60㎡이하”로 감면 축소된 것을 다시 환원)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안입니다.

최근 들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금은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안처럼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적으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처럼 개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